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5
----------	-------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이헌승 · 성일종 · 추경호
최형두 · 서일준 · 이인선
강명구 · 김상훈 · 박준태
임이자 · 엄태영 · 고동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준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한편, 전직

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제1항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병역법」, 「군인사법」”을 “제4호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으로 한다.

4.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제대군인(제2조제1항제5호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제대군인”으로, “최장 6개월간”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6개월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7개월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8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제대군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u>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u> 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u>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단기복무 제대군인</u> ”이란 <u>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u> 5. ----- <u>제4호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병역법」</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 <u>-제대군인(제2조제1항제5호의 무복무 제대군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u>. <단서 삭제></u>

②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
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
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
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
람

2. 3. (생략)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
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
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
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② -----제대군인-----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6개
월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최
장 7개월간, 장기복무 제대군인
은 최장 8개월간-----.

1. 제대군인-----

2. 3. (현행과 같음)

③ -----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 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